

방통위, (주)와이티엔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 2월 7일(수)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와이티엔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주)가 (주)와이티엔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23.11.16)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구성하여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주)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23.11.29)하였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주)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23.12.12)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24.2월)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24.2.5)하였다.

(주)와이티엔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와이티엔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붙임 (주)와이티엔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승한 (02-2110-1430)
		담당자	사무관	이선아 (02-2110-1432)

(붙임)

(주)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1.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주)의 사외이사과 감사를 유진이엔티(주)의 최대주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2. (주)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과 감사는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3. 유진이엔티(주)(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4. 사업계획서('23.11.15) 및 추가 개선계획('24.1.15,/'24.1.29)에 제시한 (주)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5. (주)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방송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포함)를 하지 않을 것
6.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대로 (주)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YTN을 위해 사용할 것
7.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주)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을 이행할 것
8.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주)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9.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 이와 별도로 유진이엔티(주)의 추가적 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10. 1~9호의 조건과 유진이엔티(주) 및 유진이엔티(주)의 최대액출자자의 최대액출자자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